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29
----------	-------

발의연월일 : 2025. 11. 20.

발 의 자 : 김재원 · 황운하 · 신장식
최혁진 · 한창민 · 용혜인
박은정 · 강경숙 · 김준형
임오경 · 손 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굴 과정에서 발굴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매장유산의 원형이 훼손되거나 유구와 유물의 맥락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 이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또는 출토품 관리 미흡 등으로 이어져 매장유산의 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저하되고 체계적인 보호와 연구·조사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발굴허가 시 제출하는 발굴계획서에는 발굴 목적, 발굴 위치·범위, 발굴 참여 인력 현황, 보존·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은 매장유산의 발굴, 보존·관리 등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매장유산의 학문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매장유산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4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비서류”를 “발굴계획서 등 구비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력의 업무범위”를 “인력의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로 한다.

이 경우 발굴계획서에는 발굴 목적, 발굴 위치·범위, 발굴 참여 인력 현황, 보존·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은 매장유산의 발굴, 보존·관리 등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굴허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u>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후단 신설>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 ----- ----- ----- ----- ----- <u>발굴계획서 등 구비서류</u> ----- ----- ----- ----- ----- . 이 경우 <u>발굴계획서에는 발굴 목적, 발굴 위치·범위, 발굴 참여 인력 현황, 보존·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은 매장유산의 발굴, 보존·관리 등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발굴에 참여하는 <u>인력의 업무범위</u> 등에	④ ----- ----- ----- <u>인력의 자격기준 및 업</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u>무범위</u> ----- -----.
-----------------------------	----------------------------